

마) 병가의 사례

【사례 1】 아래 사례의 경우 병가일수 계산 방법(교원휴가 관련 질의·답변 사례집(2022.2월, 교육부))

- ① 병가를 3일(월,화,수) 사용
 - ② 병가를 5일 사용(수,목,금,토,일,월,화)
 - ③ 병가를 15일 사용(월,화,수,목,금,토,일,월,화,수,목,금,토,일,월,화,수,목,금)
 - ④ 병가를 10일 사용(월,화,수,목,금,토,일,월,화,수,목,금)
- ⇒ 연간 병가일수: ① 3일 + ② 7일 + ③ 19일 + ④ 12일 = 41일

☞ 휴가기간이란 휴가시작일과 종료일을 말하므로 각각 다른 사유의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연간 각 병가기간의 총합이 주말을 포함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병가 사용 기간에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하여 계산

【사례 2】 2개 연도에 걸쳐 30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

☞ 연도별로 구분하여 각각 30일 이상인 경우에만 공휴일과 토요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해야 함

【사례 3】 난임 진단서로 병가가 가능한지

☞ 승인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병가 사용이 질병의 치료와 감염위험의 차단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. 난임의 사유로 병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에 대하여 승인권자의 판단이 필요하며, 승인권자는 병가를 신청한 공무원의 진술, 진단서, 기타 질병치료 관련 자료 등을 참고하여 병가요건에 해당 되는지를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함

【사례 4】 2021.7.5.(월)~2021.7.23.(금)까지 병가를 실시하고 하계휴업일『교육공무원법』 제41조에 의한 연수 실시 이후 2021.8.16.(월)~2021.9.24.(금)까지 병가가 가능한지

☞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 장소의 제한을 완화해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곳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수 제도로 학생의 수업활동은 없지만 근무일인 휴업일(방학, 재량휴업일)에 실시하며, 학교의 장은 연수계획의 승인과정을 통해 연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함. 따라서, 병가의 목적 (질병·부상의 치료 및 감염병 차단)으로 휴업일을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의한 연수로 실시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

【사례 5】 병가, 병조퇴, 병지각, 병외출을 합산하여 병가를 50일 5시간을 사용하였을 때, 향후 실시 할 수 있는 병가일수는

☞ 병가는 연간 60일 이내에서 사용해야하며, 60일이 되는 9일 3시간을 사용할 수 있음. 요양이 더 필요한 경우 당해 연도 잔여 연가일수 내에서 실시하거나, 휴직해야 함

3) 공가

가) 학교의 장은 소속교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승인하여야 함